



— 2010년도 관세감면대상 공장자동화 물품 www.kcca.or.kr

2010년도 관세감면대상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100분의 30”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2009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한다.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까지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제25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법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
(제46조제2항 관련)연번관세율표**

연번	관세율표 번호		품 명	규 격
	호	소호		
34	8479	89	적재기 또는 분리기	<p>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p> <p>6. 골판지 적재용으로서 폭이 1.8미터 이상이고, 최대 분당 250미터 이상의 속도로 생산되는 골판지를 적재할 수 있는 것</p>
35	8442	30	결속기, 포장기 또는 튜빙기	<p>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p> <p>2. 기저귀(팬츠형을 포함한다), 생리대, 화장지, 키친타월 또는 미용지를 투입, 정렬, 포장, 실링(Sealing) 및 자동 취출(取出)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최대 포장능력이 분당 50백(bag) 이상인 것 ④ 종이상자, 필름 또는 투브를 이용하여 포장하는 것으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분당 6케이스 이상이거나 분당 6번들 이상인 것 <p>3. 둘 또는 시트상태의 종이제품 처리용으로서 투입·정렬·포장·실링 또는 테이핑 공정으로 구성되고, 자동 취출 기능이 있으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⑦ 최대 포장능력이 시간당 20를 이상인 것 ⑧ 최대 포장능력이 분당 14팀 이상인 것 ⑨ 최대 포장능력이 분당 3팩 이상인 것
42	8441	10,80	절단기, 슬리터(Slitter), 파단분할기, 슬라이싱기, 와이어쏘우(Wire Saw) 또는 클래빙기(Cleaving)	<p>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p> <p>2. 알루미늄박, 알루미늄판, 종이, 필름, 부직포, 스테인리스 또는 판지를 절단한 후 트리밍 또는 권취 할 수 있는 것</p> <p>20. 골판지를 진행방향으로 자른 후 괘선을 넣을 수 있는 것</p>
52	8441 8443	30 91	플렉소폴더스티처 (Flexo Folder Stitcher) 또는 플렉소폴더글루어 (Flexo Folder Gluer)	<p>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골판지상자 제조시 인쇄공정 및 봉합공정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p> <p>1. 풀봉합 방식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200매 이상인 것</p> <p>2. 철박음 방식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700회 이상인 것</p>